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6-054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2.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피심인은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인이 신고인의 ○○○○ 상담신청서를 피심인이고용한 ○○○○ ○○○에게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침해신고'하여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20. 5. 12.)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피심인은 ○○○○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통해 '20. 5. 12.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일
신청서		~'20. 5. 12

나.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 상담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3.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4. 1.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피심인이 ○○○○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 상담을 위한 민감정보수집 시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는 보호법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신고인은 본인의 ○○신청서가 ○○○○에게 제공된 사항이 제3자 제공

위반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심인이 ○○○○○를 '17.11.1.~'19.10.31.까지 위촉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상담도 피심인의 ○○○○센터 내의 상담실에서 진행한 사실로 볼 때, ○○○○는 피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여제3자제공으로 볼 수 없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항,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4월 12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